

생산/구매/경영기획

자율준수편람

- 하도급 -

2025

한국콜마(주)

차례



목차 및 차례

I. 들어가며

1. 공정거래위원회 알아보기

1.1 목적과 기능

4

1.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5

II. 공정거래법규

1. 하도급법

1.1 제정 목적

6

1.2 주요내용

6

1.2.1 키워드

6

1.2.2 원사업자 의무사항

7

1.2.3 원사업자 금지사항

12

1.2.4 위반시 제재

21

1.3 하도급대금연동제

24

1.3.1 개요

24

1.3.2 키워드

24

차례



1.3.3 주요 내용 25

1.4 Q&A 29

1.5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39

III. 부록

① 하도급거래 자율점검표 44

I. 들어가며

1 공정거래위원회 알아보기

1.1 목적과 기능

경쟁촉진



시장 참여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및 규제 집행

소비자 주권확립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경제력집중 억제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I. 들어가며

1.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경쟁정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거래정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정책

-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II. 공정거래법규

1 하도급법



1.1 제정 목적

하도급법 전문 확인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1.2 주요내용

1.2.1 키워드

구분	설명
하도급거래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수행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사업자
기술자료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및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하도급대금연동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

II. 공정거래법규

1.2.2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법 제3조)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전사 서면 포함)을 위탁업무 개시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서면기재사항



Do&Don'ts	기재사항	check
위탁일 및 목적물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 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기일		
원사업자가 원재료 제공할 경우, 원재료의 품목,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방법과 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류의 보존

3년간 보존	계약서
	수령증명서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대금 지급일 · 지급 금액 및 지급 수단 (어음으로 지급 시,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
	선금금, 어음할인료, 수수료, 관세 등 환급액, 지연 이자의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제한 경우, 제공한 원재료 등의 내용, 공제일·공제 금액·공제 사유
	감액한 경우, 감액 사유·기준·대상 물량·금액·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 금액 및 사유
	수급사업자 등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 금액 및 조정 사유
	입찰 명세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II. 공정거래법규

7년간
보존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명칭 및 범위·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법 제3조 제8항)

-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 내용의 확인 요청 가능
-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인정한 것으로 추정함

관련 심결례

S사의 서면 지연 교부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2014.1.15.~ 2015.11.2. 기간 동안 A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1일~29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원사업자의 계약요청서 송부만으로는 서면의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함

II. 공정거래법규

- 선금금 지급 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선금금을 받은 15일 이내(법정지급기일) 지급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법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결정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관련 심결례

J사의 선금금 지급 위반 행위 제재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J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14억을 수령하였으나,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3억 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J사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 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J사에게 재발방지 및 대금지급 명령을 내림

II. 공정거래법규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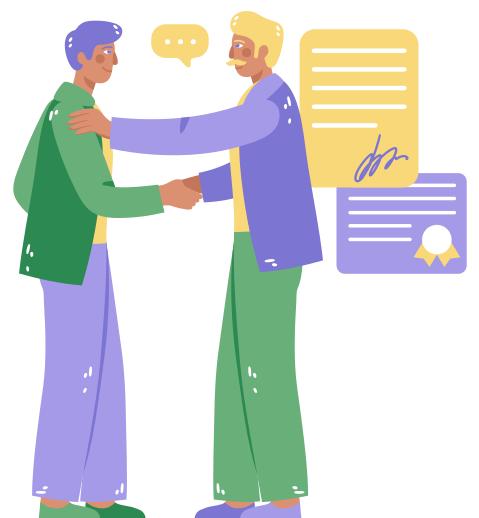
- 법정지급기일의 결정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경우	약정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15.5%)



- **지급수단에 따른 금지사항**

현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어음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교부 금지 - 60일이 초과한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 어음할인요(연 7.5%) 또는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N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사실관계

N사는 B사로부터 다운점퍼 2가지 품목을 제조위탁한 후 60일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기 납품한 제품에서 텀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가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B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함

관련 심결례



S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13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개시 이후에 발급하였음. 또한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 후 수령확인서를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천 8백만 원),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1.2.3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 설정 금지



Do&Don'ts	금지 약정	check
서면 미기재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법 제4조)

-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Do&Don't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 결정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공제하여 대금 결정 → '협조요청' 등의 표현도 일방적인 행위로 간주함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 결정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대금 결정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결정		

II. 공정거래법규

- 물품 등의 구매 강지 금지(법 제5조)
 -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법 제8조)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금지



Do&Don'ts	부당 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감액 금지(법 제11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Do&Don'ts	부당 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계약 시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		

II. 공정거래법규

- 물품 등의 구매 강지 금지(법 제5조)
 -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법 제8조)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금지



Do&Don'ts	부당 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감액 금지(법 제11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Do&Don'ts	부당 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계약 시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		

II. 공정거래법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사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감액	
목적물 위탁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교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위탁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부당결제청구 금지



Do&Don'ts	부당 결제청구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S사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2015.11.5.부터 2018.11.4. 기간 동안 C사 등 142개 수급사업자에게 철의 장품, 배관류, 전장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한 후 발주처 요청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과 발주처 요청의 경우는 전적으로 S사 측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S사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며, 사내 협력사들이 사용하는 사내 게시판 및 S사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3,61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관련 심결례



H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제재

사실관계

H사는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음.

또한, H사는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공정위 판단

H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H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함

II. 공정거래법규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함



Do&Don'ts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check

기술자료 요구 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의 필수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함



Do&Don'ts

기술자료 취득 후 금지행위

check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M사의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행위 제재



사실관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M사는 화장품 제조업자인 C사에 ODM 방식으로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의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였음. 이 과정에서 9개 화장품의 전성분(성분 전체) 및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이하 ‘전성분표’)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M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또한 본 사건에서 기술자료 요구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음

관련 심결례



H사의 기술자료 요구 위반 행위 제재

사실관계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H사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해외 진출 제안을 거절 받자, A사의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업자인 B사에 제공하여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C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 없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등은 기술자료 요구 위반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H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한 대물 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금지



Do&Don'ts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u>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u> 를 요구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



- ✓ 목적물 납품 원가 관련 정보
 - : 원가계산서, 재료비 및 노무비 세부지급내역 등
- ✓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매출 관련 정보
 - :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 경영전략 관련 정보
 - : 제품 개발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 ✓ 영업 관련 정보
 - : 거래처 명부, 납품조건(금액, 수량 등) 등
- ✓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 고유식별명칭 등

II. 공정거래법규

-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 수급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혹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서면 교부 회피 금지

1.2.4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 명령,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
 -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3년간 벌점 5점 초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II. 공정거래법규

- 과태료 부과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허위자료 제출자
: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 사업자 2억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천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요구한 자
: 원사업자 5천만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한 자
: 원사업자 500만원 이하
 -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 사법적 제재(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금지 위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
 - 경영간섭, 탈법행위 금지 위반
 -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3배 배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요구, 보복조치

II. 공정거래법규

- 금지청구 제도 도입(법 제34조의 2, 2025.12.17 시행)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과 같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그 원사업자에 대해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히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설비를 폐기 및 제거 조치도 청구할 수 있음



II. 공정거래법규

1.3 하도급대금연동제

1.3.1 개요

하도급대금연동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에 대해서



변동이 발생된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1.3.2 키워드

구분	설명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 -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 또는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
주요 원재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가세 포함)
목적물	하도급대금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것
조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동 대상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 - 이 비율은 10% 이내여야 함

II. 공정거래법규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하도급대금연동 산식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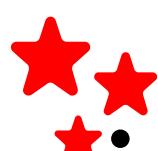
원재료의 범위와 예시



- 1)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원유, 원목 등
 - 2) 화합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 3)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금속강, 골재, 시멘트, 합성수지 등
 - 4)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중간재: 기계부품, 나사, 반제품 등
- ※ 위 1~4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주의

1.3.2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 하도급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할 수 있음
- **연동제의 적용**
 - 연동제 적용의 필수전제 조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충분한 협의"임
 - 협의, 체결, 시행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는 반드시 보존



II. 공정거래법규

- 하도급대금연동제의 절차



상호 협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협의
- 이때, 협의와 관련된 증빙은 반드시 보관



연동약정

- 상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약정서 및 연동표 작성

체결 및 발급



가격변동

-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대상 원재료 가격 지표의 변동률 확인



약정에 따라
대금조정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산출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적용



조정대금
지급

-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 납품되는 목적물에 대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II. 공정거래법규

•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구분	내용	check
목적물 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증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협의하여 정한 변동 비율)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주기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반영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	
기타사항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	

II. 공정거래법규

- 연동 예외 사유

연동 예외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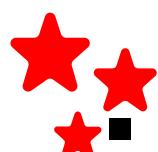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연동하기로 합의한 경우

→ 이 경우, 미연동하기로 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해야 함



성실한 협의 의무(법 제3조제3항)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해야 함
-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예
 - 연동에 관한 협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계약 관련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II. 공정거래법규

1.3.3 Q&A



Q.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사는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에서는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나요?

A.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은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법 시행령 별표1의 연간매출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연간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부터 10항까지 및 제19조 등을 적용할 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는 원사업자로,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11항은 예외적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같은 조 같은 항에 나열된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조는 법 제13조 제1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법 제6조는 중견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저희 회사는 제조 위탁을 A회사로부터 수급 받아 목적물을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보내둔 상태며, 검사결과를 원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아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지와 그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로 인한 대금 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검사 기준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A군에서 발주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 먼저 견적 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약 과정에 있어 우리 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고 하며 계약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감액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하였던 견적 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A회사는 비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나중에 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구두)하였으나 정작 손실의 일부만을 보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기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원사업자인 A회사는 저희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두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가요?

A.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전형적인 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Q.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A.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A건설은 수십 개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경우 이를 구매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요?

A.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A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은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Q. 발주자가 지급한 어음이 타인 발행의 어음인 경우, 그 지급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발주자가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 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고객사(A)가 협력사(B)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타 업체(C)에게 전달한 경우입니다. C는 A와 B 사이의 유통업체이며, C는 해당자료의 출처 등에 대해 사전공지 받지 못하였고, B의 기술자료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 1-1) 자료를 수취 받은 C업체도 기술 문서의 관리 의무가 있나요?
- 1-2) C사가 해당 자료를 입찰 등을 위하여 타 업체(D)에게 공개했을 경우 기술자료 유용/유출 행위로 판단되나요?
2. 기술 자료의 형태가 문서가 아닌 경우에도 기술자료 범주에 포함되나요?

A. C는 B와의 관계에서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보호 의무가 없고, C에게 기술유용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가 C의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C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A에게 기술유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는 특허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는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 납기 정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 자료의 정의에 의거 기술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 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저희 회사는 수급사업자로 A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목적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물품 구매강제행위에 해당하나요?

A.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선급금은 항상 지급해야하나요?

A.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 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Q.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비율로 지급해야하나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 비율을 산술 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현금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약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나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행위입니다.

Q.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정보가 절차적 ·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제조 위탁을 요구하고 그 발생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 특약에 해당하나요?

A.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합니다.

Q.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법 제3항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1.3.4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 서면 기재사항 관련

기재사항	check
위탁일 및 목적물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 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기일	
원사업자가 원재료 제공할 경우, 원재료의 품목,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방법과 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부당특약 금지 관련

금지 약정	check
서면 미기재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 결정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공제하여 대금 결정 → ‘협조요청’ 등의 표현도 일방적인 행위로 간주함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 결정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대금 결정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결정	

❖ 부당 반품 금지 관련

부당 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 감액 금지 관련

부당 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계약 시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사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감액	
목적물 위탁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부당 결제청구 금지 관련

부당 결제청구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기술자료 요구시 필수 기재사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check
기술자료 요구 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기술자료 취득 후 금지행위

기술자료 취득 후 금지행위	check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부당 경영간섭 금지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구분	내용	check
목적물 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증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협의하여 정한 변동 비율)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주기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반영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	
기타사항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	

[부록] 하도급거래 자율점검표

■ 하도급거래

※ 자율점검표 기준

- :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 즉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 △와 ✗가 확인될 경우, 준법지원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비고란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일반 사항	1	협력사와의 거래 중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거래를 별도로 관리한다.		
	2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문서(회의록, 기안문 등)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3	협력사와의 계약에 있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4	협력사에게 계약조건으로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의 제공 또는 제3자에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5	협력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타 거래처로 변경할 가능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 문구 제시 또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거래 개시 및 협상 단계	6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유사 거래관계에서 지급된 대가, 공표가격 등을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격보다 낮은 대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 목적물의 검사방법·절차·기준, 반품 사유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협상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다.		
	8	협력사가 위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 등 하도급 서면을 교부한다.		
	9	협력사에 교부되는 하도급 서면에 법정 기재사항, 거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될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0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거래 이행 단계	11	협력사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작업이나 부수적인 작업의 경우에도 협력사에게 추가계약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먼저 교부하고 있다.		
	12	협력사가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록] 하도급거래 자율점검표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거래 이행 단계	13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협력사와 합의한 기간 (최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14	협력사로부터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지 않는다.		
	15	협력사가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6	협력사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협력사의 경영상 영업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래 갱신 단계	17	협력사와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교부가 필요한 서면을 발급한다.		
	18	협력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거래종료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보관한다.		
	19	거래가 종료된 후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않고 있다.		
하도 급대 금연 동	20	협력사와 '하도급대금연동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과정을 모두 문서로 기록한다.		
	21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등 협의 개요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22	'하도급대금연동제'에 대해 협의할 때, 협력사의 의견을 존중한다.		